

대한 두개저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위원회는 '대한두개저학회 간행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대한두개저학회의 상임이사 동의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Journal of Korean Skull Base Society]는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연 2 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념호, 특별호 등을 발간할 수 있다. 발간일자는 5 월 30 일, 10 월 31 일로 한다)
- 2) 학회 홈페이지 또는 여타의 전자적 매체를 통한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간될 수 있다.
- 3) 투고자는 학회지의 출판과 그 활용에 관한 대한두개저학회의 권리를 승인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편집위원회는 30 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간행(편집)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제 5 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한두개저학회의 상임이사 중 간행 이사가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출판을 총괄한다.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편집위원회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대한두개저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편집위원을 교체하거나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지명도가 높고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 대한두개저학회 분야 세부 전공 영역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2) 편집위원회 간사(이하 '편집간사'라 한다)는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간행 간사는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기 능

제 9 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Journal of Korean Skull Base Society] 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 10 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편집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이 각 논문의 2 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한다. 그리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 11 조

편집회의는 1 년에 2 회 이상 개최하고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학회에 기고된 논문의 수시심사 및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편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 5 장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관리

제 13 조

논문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1) 각 연구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제 14 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5 조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 16 조

논문의 심사는 아래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2.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범위의 적절성 및 연구주제의 창의성
- 2) 연구 방법의 유효성 및 논리전개의 일관성
- 3) 연구 내용 및 결과의 타당성 및 기여도
- 4) 영문 표현의 적절성 3.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게재가>,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4 등급으로 평가한다. 심사위원 2 인의 판정을 근거로 편집위원이 총평을 한다.

4.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접수: 논문이 투고되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메일이 발송되며, 편집사무국(Editorial Office)에서 전체적인 형식, 오타, 윤리 규정 준수 (이중게재, 중복게재, 표절 등 이 없는지

여부)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한다. 편집위원회 간사의 확인 후 학술지 기준을 만족 시 논문이 접수되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 심사 진행 의뢰 드리는 메일이 발송된다.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분야에 따라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 논문에 대해 전공에 맞는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편집위원에게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선정된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 시스템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2 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선정하며 이 2 명에게 심사위원 선정 메일이 발송된다.

3) 논문판정 및 평가사항: '게재가',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네 가지 항목 중 한가지로 선택하여 판정한다. 통상적으로 심사자 2 인의 판정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이 선택한다. 단, 편집위원은 심사자들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기의 통상적 판정 이외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4) 논문 검토: 이전 심사에서 '수정 후 채택' 으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은, 투고자 최종 수정 논문 완성 후, 최종 원고가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확인 검토한다.

5) 재심 심사: 심사위원 1 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으로 심사한 경우 편집위원은 재심을 판정할 수 있다. 단, 논문의 내용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역시 이같이 판정할 수 있다. 재심은 심사위원 중 재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심사되며 위의 심사 과정이 반복된다. 재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은 추가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하게 할 수 있다.

6) 편집회의: '게재허가'로 판정된 논문들을 수합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영문 교정, 형식 교정 및 통계 검증의 작업이 한번 더 진행된다.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추가적인 정보 (예: 참고문헌 제출, IRB No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최종 검증 작업을 마치고 출판이 확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7) 종설(Review article)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히 요청되며, 예외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부 칙

제19조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0 조

본 규정은 대한두개저학회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 11~)